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72호
----------	--------

제출년월일 2026. 7. 8.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지역축제 안전관리 중요성 증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의안번호 제2022-851호)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축제 운영 과정에서 축제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축제 평가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축제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축제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추가(안 제4조제2항제4호)
- 나. 축제위원회 구성 시 안전 분야 전문가 추가(안 제5조제3항제4호)
- 다. 축제 평가대상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 라. 축제 평가기준 신설(안 제11조제3항)
- 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의무규정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6. 3. 20. ~ 4. 9.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나) 경 기 도 : 관광산업과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규 대표 축제의 발굴·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문화예술, 관광, 축제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3. 문화예술, 관광, 축제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행사 개최·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안전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축제 등과 관련된 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제4호”를 “제4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원대상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가자 호응도 등
2. 축제운영, 행사진행 전반,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안전관리 등) 축제 주관부서 및 기관·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제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관광진흥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관광진흥과장 조 은 정
	팀 직위·성명	관광사업팀장 권 두 택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박 희 경(☎511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축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 3. (생략) <u><신설></u> 4.·5. (생략)	제4조(축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신규 대표 축제의 발굴·개발에 관한 사항</u>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 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 1. (생략) 2. <u>축제업무 담당 국장</u> 3. <u>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 라 한다).</u> 다만, 「양성평등기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 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u>가. 문화예술, 관광, 축제 관련 기</u>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 담당 국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 1. (현행과 같음) 2. <u>문화예술, 관광, 축제 관련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u> 3. <u>문화예술, 관광, 축제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행사 개최·운 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u>

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나. 문화예술, 관광, 축제 등과 관
련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행사
개최·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축제 등과 관
련된 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추
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제9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제4조제2
항제4호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
된 축제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조(축제의 평가) ①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선정된 축제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축제 개최 결과보고
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4. 안전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축제 등과 관련된
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제4조제2
항제5호-----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축제의 평가) ① 제4조제2항제
5호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

-----.

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
활동, 관객확보, 참가자 호응도 등
2. 축제운영, 행사진행 전반, 축제 프
로그램의 수준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

<신 설>

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제12조(안전관리 등) 축제 주관부서 및 기관·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축제란 지역 관광·문화·예술 진흥,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와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정기적 행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 육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축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김포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프로그램 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3. 27.>

1. 김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 축제업무 담당 국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문화예술, 관광, 축제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나. 문화예술, 관광, 축제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행사 개최·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축제 등과 관련된 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축제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추진 또는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 교통수단 및 무료 체험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홍보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대행)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사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축제의 평가)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축제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